

제7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
3.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

4. 진흥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

5.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## 붙임 2

##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

### □ 응시자격 증빙서류

구분	대상	제출서류
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사에정일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(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)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「병역법」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아래에 따름              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만 37세</li> <li>·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만 36세</li> <li>·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만 35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민등록초본</li> </ul>
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인증명서(국가유공장애인 경우,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)</li> </ul>
고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서 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(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</li> </ul> ※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, 재학·휴학자 지원 가능하나, 아래의 경우 지원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종 학력이 대학(이하 전문대학 포함) 졸업자이거나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 또는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최종학력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대학 재학 중인 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련증명서(재학/휴학/제적 증명서 등)</li> </ul> </li> <li>② (고등학교 졸업자)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, 대학(전문대 포함)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신청 증명서(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발급)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,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) "신청내역 없음"으로 발급</li> <li>* (학자금 대출사실이 있는 경우) 중퇴사실을 증명하는 제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③ (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) 졸업예정증명서</li> </ol> </li> </ul>

### □ 우대사항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구분	대상	우대가점	제출서류
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                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                 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                  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                  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                  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                  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                 </div>	5점 또는 10점 (전체 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</li> </ul>

구분	대상	우대가점	제출서류	
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</li> </ul>	10점 (전체 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증명서(국가유공장애인 경우, 상이등급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)</li> </ul>	
사회 형평 인력	저소득층	3점 (서류·필기 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저소득층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</li> <li>(차상위계층)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법정차상위) 차상위계층증명서</li> <li>(자활대상자)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</li> <li>(본인부담 경감대상자)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</li> <li>(장애수당 대상자)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</li> <li>(우선돌봄 대상자)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</li> <li>(비법정차상위)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</li> </ol> </li> </ul> <p>※ 모두 본인 명의로 발급</p>	
	한부모가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부모가족증명서</li> </ul> <p>※ 모두 본인 명의로 발급</p>
	다문화가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</li> <li>※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문화가족 증명 가능 서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적취득사실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</p>
	자립준비청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(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</li> <li>※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하여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호종료확인서(퇴소사실 증명서) 또는 종료사실증명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(보호 연장한 경우,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)</li> </ul>
	북한이탈주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</li> </ul> <p>※ 모두 본인 명의로 발급</p>
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격증 보유자 (중복 시, 최상위 1개만 적용)</li> </ul>	(서류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자격증(등록증) 또는 자격취득 사항확인서</li> <li>※ 접수마감일까지 취득하거나 합격한 경우에 한함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변호사, 변리사, 노무사, 기술사, 회계사, 세무사</li> </ul>	5점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CP, CISSP, CISA, CCIE, CCNP, PMP, ISMS-P, 정보보안기사</li> </ul>	3점		

구분	대상	우대가점	제출서류
수상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·주최 경시대회, 정부기관 주관·주최 해킹방어대회 수상자</li> <li>※ 정부기관은 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(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)에 한함</li> <li>- 수상연도에 공공기관에 해당해야 함</li> <li>※ 경시대회는 특정 분야에서 참가자의 실력을 겨루는 대회를 의미하며, '공모전' 등에서의 수상은 우대 적용 제외함</li> <li>※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수상 실적에 한하여 가점 적용 (최대 1건, 공모전 등 수상 경력은 가점 미적용)</li> </ul>	3점 (서류전형)	• 해당대회 상장
KISA 우수인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4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중 우수인턴 선발자</li> </ul>	3점 (서류전형)	• 우수인턴 상장
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사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(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)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단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*에 대한 응시연령의 상한은 아래와 같이 함</p> <p>*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「병역법」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만 37세</li> <li>·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만 36세</li> <li>·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만 35세</li> </ul> </div>	1점 (서류전형)	• 주민등록초본

- ※ 모든 증빙서류는 지원서 접수마감일(2025.2.26. 포함) 이후 발급분에 한함
  - 자격증 및 수상경력(우수인턴 상장 포함) 증빙서류는 위 명시된 기준에 따름
- ※ 서류합격자 증빙서류(우대사항 및 응시자격) 제출 시 성별(주민번호 뒷자리)이 드러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(연령(청년 여부, 정년 초과 여부 등) 확인을 위한 생년월일은 필요)
  - 다만, 청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에 한하여 생년월일 정보 제출
- ※ 최종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일체 제출(별도 안내 예정)
- ※ 공고문에 안내된 서류 외 관련사항 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,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**붙임 3****블라인드 채용 안내**

○ (블라인드 처리 기준) 기재란에 작성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개인 인적사항(성명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생년월일, 연령, 성별, 출신학교 등)과 직, 간접적으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작성 불가하며,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예시 : OO대학 연구소에서)

**< 블라인드 위반 사항 예시 안내 >**

항목	위반 예시
성명	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 자기소개서, 기타 항목에 기재한 경우 (예시) 동아리 살림꾼 '홍길동' (☞ <b>위반</b> )
출신지역	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(예시) 우리나라 수도에서 태어나 줄곧 자라왔으며... (☞ <b>위반</b> )
가족관계	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(예시)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...(☞ <b>위반</b> )
생년월일 연령	지원자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(예시) 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...(☞ <b>위반</b> )
성별	지원자의 성별을 직,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(예시) 군 복무 시절/OO병 경험을 통해/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(☞ <b>위반</b> ) (예시) 결혼 후 남편과 함께(☞ <b>위반</b> ), OO여대를 졸업하고(☞ <b>위반</b> ) (예시)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지원받으며(☞ <b>위반</b> ) (예시) 동아리 활동 중 친한 형(누나, 언니)에게(☞ <b>위반</b> ) (예시) 손녀(자)·장남(여)으로서(☞ <b>위반</b> )

항목	위반 예시
출신학교	<p>지원자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(지도교수명, 특수전공명, 특정 동아리 등 포함)을 기재  (예시) 재학시절 한국대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(☞위반)  (예시) HNU 취업동아리 활동을 수행하면서(☞위반)  (예시) 'HNU 발표와 토론' 수업을 수강하면서(☞위반)</p> <p>- 구체적인 동아리명 대신 활동 분야 등으로 기재 가능  (예시) 정보보호 동아리에 가입하여~(☞가능)</p> <p>-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전공명 기재한 경우 위반  (예시) 어문계열 국내 유일 학과(혹은 해당 전공명 기재)로~(☞위반)  (예시) 정보보호 분야를 공부하였고...(☞가능)</p>
종교	<p>종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한 경우  (예시) OO교회, OO성당 수련회, 단기선교 등 활동을 통해~ 등(☞위반)  (예시)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~(☞위반)</p>
경력 및 경험사항	<p>경력사항과 관련한 직장명은 기재 가능</p> <p>- 다만, 학교 근무 경력이거나 지역명이 포함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필수  (예시)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청년인턴을 하며~(☞가능)  (예시)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며~(☞위반)  (예시)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며~(☞가능)  (예시) 광주은행에서 행원으로 근무하며~(☞위반)  (예시) OO은행에서 행원으로 근무하며~(☞가능)</p> <p>- 경험사항 내에도 지역이나 학교명이 들어갈 경우 블라인드 처리 필수  (예시) 호남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~(☞위반)  (예시) OO지역 경진대회에서 우수한~(☞가능)  (예시) 한국대학교 교내공모전에서 입상하여~(☞위반)  (예시) OO대학교 교내공모전에서 입상하여~(☞가능)</p>
자격증 및 어학사항	<p>자격증명이나 어학성적 취득을 기술하는 것은 가능</p> <p>- 다만, 특정 어학성적명과 구체적인 점수를 언급하는 것은 불가  (예시) 사회조사분석사 2급을 취득하여~(☞가능)  (예시) 공인어학성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였으며(☞가능)  (예시) 공인어학성적으로 TOEIC를 공부하여 900점을 취득하였으며~(☞위반)</p>

※ 상기 예시 외에도 직, 간접적으로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처리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 4****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세부사항**

- 추진근거 :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
- 대상 : 광주광역시, 전남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(대학원 이상 제외)
  -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·제출할 수 있는 자 (학교 측에 반드시 사전 확인)

**<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>**

이전지역인재 :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"이전지역 학교"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

- 분야 : 연간 채용(예정)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분야
- 단계 : 전형별 합격자 결정 시
- 방법 : 해당 채용분야 및 채용전형별 합격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%에 미달할 경우, 「합격선 -5점(가점 포함)」 이내에서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 고득점순으로,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(단, 과락자는 제외)
  - 추가합격 대상자가 동점자일 경우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을 따름
  - 단, 적격자에 한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

□ **편의지원 제공대상**

-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 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  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서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

□ **편의지원 신청방법**

- 입사지원서 작성 시 편의제공 희망여부 기재
-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, 편의지원 신청서(참고4)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(신청 메일주소 추후 안내 예정)
- 서류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, 편의지원 희망조사 실시 예정
  -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경우, 반드시 기재된 장애유형 및 정도, 편의지원 내용으로 작성
  -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(참고1, 2) 외 장애 및 요청사항은 지원하지 않음
  -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편의지원 제공
  - 상이등급자인 경우, 「장애인복지법」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,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

## [참고1]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(필기전형)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	
지체 장애	상지	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확대문제지</li> <li>• 확대답안지</li> <li>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li>• 별도시험실 배정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	
		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</li> <li>• 답안지 대필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	구 1~3급
	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	구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</li> <li>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	구 1~6급
뇌병변 장애	공 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확대문제지</li> <li>• 확대답안지</li> <li>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li>•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</li> <li>• 별도시험실 배정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</li> <li>• 답안지 대필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	구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</li> </ul>	의사진단서 (원본)	구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	
시각 장애	공 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확대(축소)문제지</li> <li>• 확대답안지</li> <li>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	
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험시간 1.7배 연장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(원본)	구 1~2급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구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	구 3급 1,2호
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험시간 1.7배 연장</li> </ul>	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(원본)	구 4급 2호	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
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	장애인증명서	
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• 시험시간 1.5배 연장	장애인증명서	구 4,5급 1호
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)	구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위 조건 외의 시각 장애인	•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장애인증명서	구 5급 2호, 구 6급
<b>청각 장애</b>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•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증명서	구 2~6급
<b>기타</b>	특수 및 중복장애 / 일시적 신체장애	•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(원본)	
	임산부	•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• 높낮이 조절 책상	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(원본)	

- ※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- ※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
- ※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
- ※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(소견서)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

## [참고2]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(면접전형)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
지체장애	상지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· 전담도우미 지원</li> <li>· 관련자료 등 확대 제공</li> </ul>
	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면접 시간 1.5배 연장</li> </ul>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자 / 심하지 않은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· 전담도우미 지원</li> <li>· 휠체어전용책상(휠체어사용자)</li> </ul>
뇌병변 장애	공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· 전담도우미 지원</li> <li>· 관련자료 등 확대 제공</li> </ul>
	장애정도가 심한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면접 시간 1.5배 연장</li> </ul>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	
시각장애	장애 정도가 심한 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· 전담도우미 지원</li> </ul>
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련자료 등 확대 제공</li> <li>· 면접 시간 1.5배 연장</li> </ul>
청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/ 심하지 않은 사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</li> <li>· 의사전달 보조요원</li> <li>· 필담면접</li> <li>·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</li> <li>· 면접 시간 1.5배 연장</li> </ul>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</li> </ul>
	임산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담도우미 지원 높낮이 조절 책상</li> </ul>

※ 면접전형은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

### [참고3] 증빙서류 유의사항

-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  -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 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  -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불인정
  - 단, 임신부 증빙서류는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
- 발급일자 :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2025.2.26.)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  - 기타 장애, 임신부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(원본)
-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(아래 3가지)
  -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(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)
 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  - 지원서 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의함

#### <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 ※ ①~③ 반드시 기재
시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사람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시력/시야 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시력 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 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 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기타	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- 증상 :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)

※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

